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281,542,239	38,446,267
일반회계	1,137,430,661	34,122,920
특별회계	144,111,578	4,323,347
공기업특별회계	137,383,933	4,121,518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7,233,275	1,116,998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00,150,658	3,004,520
기타특별회계	6,727,645	201,829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,165,326	64,960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1,549,397	46,482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423,204	12,696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2,149,347	64,480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22,540	676
지하수특별회계	417,831	12,53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,525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